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64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허성무 · 김병주 · 김정호
민홍철 · 김원이 · 박선원
김종민 · 김동아 · 김용만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 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 안보 동맹과 산업협력을 토대로 조선산업 분야 친환경 · 스마트 전환, 함정 유지 · 보수 · 정비, 공동기술개발 등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의 원활한 협력기반 마련과 국내 조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조선산업 특화구역 내 함정 유지·보수·정비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정부는 조선기업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미래형 선박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선산업 관련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건조·제조·가공·조립·재생·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나, 항해나 자원의 탐사·개발 등을 위하여 해상 또는 그 아래에 설치하는 이동식·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

2. “조선기업”이란 조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이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체결된 조선

산업 관련 조약·협약·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공동 연구개발사업

나. 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공동 개발·실증 사업

다.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교육 및 교류 사업

라. 조선기자재의 공동 생산 및 공급망 구축 사업

마. 조선·해양 분야 표준화, 안전관리규정, 인증제도 관련 공동 협력 사업

바. 선박 및 조선기자재 등의 수출입 투자 촉진 사업

사. 제8조에 따른 조선산업 특화구역 내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아. 그 밖에 조선산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미래형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소형모듈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소프트웨어 또

는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마. 항로 개척 등을 위한 쇄빙선(碎氷船) 및 내빙선(耐氷船)

바.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조선기업의 해외 선박 수주 기회 증대, 조선산업 분야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선산업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양국 간 체결된 조약·협약·협정 등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

협약·협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친환경 조선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방산 산업 연계 프로젝트 추진 방안
6.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기자재 공동 조달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
7. 그 밖에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변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선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선산업협력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조선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협력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협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8조(특화구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의 원활한 협력기반 마련과 국내 조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이하 “특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특화구역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화구역 지원) ① 정부는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화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만·물류·교통·전력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능 고도화
 2. 특화구역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 기술혁신 기반 구축
 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4. 특화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금융지원 등의 우대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용단지 조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구역 내 함정 유지·보수·정비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함정관리전용단지(이하 “전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전용단지의 조성 범위, 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용단지 지원) ① 정부는 전용단지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용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지조성 공사비 지원
2.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
3. 전용단지 입주기업 대상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공급 지원
4.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친환경 기자재 도입 및 생산설비의 기능 고도화 지원
5.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및 금융 지원
6. 생산·가공·조립 등 관련 기자재 공동 활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7. 그 밖에 전용단지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세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특화구역 지원사업
2. 제11조에 따른 전용단지 지원사업

제4장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제14조(맞춤형 조선기업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사업을 위하여 조선기업의 조선산업 관련 제품·시설에 대한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지원 등) ① 정부는 조선기업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기준 및 절차, 펀드 조성·운영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동연구개발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미래형 선박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조선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생산 인력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선산업 전문인력의 해외 파견 및 연수
2. 미국 연구기관 등과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석·박사학위 연계 국제 공동 학위과정의 지원
4. 재직자 직무 전환 및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 운영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네트워크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조선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표준화 협력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기업이 미국 조선소 법인의 지분 인수 또는 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선산업 관련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조선산업 협의체) 정부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선산업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22조(조선산업협력기금의 설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
2. 정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3조(비밀유지의무) 제7조에 따른 조선산업협력협약체 및 제21조에 따른 국제조선산업 협의체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